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03

발의연월일: 2020. 9. 28.

발 의 자:정점식·정운천·이달곤

이양수・송석준・김정재

임이자 • 박완수 • 김성원

서일준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최근 원거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여객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도록 개정되었음.

이와 관련하여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(渡船)사업에 이용되는 도선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근거리(2해리: 약3.7킬로미터) 도서 지역이나 내수면 오지 지역에서 주된 교통수단의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이 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못하여 각종 대중교통 육성·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(渡船)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 고,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제4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##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23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"접안시설"을 "도선장, 접안시설"로, "여객선"을 "여객선과 도선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"「해운법」"을 "「해운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"으로, "대 중교통시설"을 "대중교통시설"로 한다.

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

제4조의2 중 "제2조제2호라목"을 "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"으로 한다. 제5조제1항 후단 중 "해상대중교통"을 "수상대중교통"으로,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231호 대중교통의 육성	법률 제17231호 대중교통의 육성
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	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대중교통수단"이라 함은 일	2
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	
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	
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	
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</u>
	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
	업에 사용되는 도선
<u>마.</u> (생 략)	<u>바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
3. "대중교통시설"이라 함은 대	3
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	
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	
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것을 말한다.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여객터미널, 선착장, 접안	마도

<u>시설</u>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<u>여객선</u>의 원활한 운항 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 물

바. (생략)

4. "대중교통운영자"라 함은 대 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 중교통시설을 경영·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해운법」 및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<u>대 중교통시설</u>의 사 업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·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·신 고 등을 한 자

나. (생 략)

5. ~ 7. (생략)

제4조의2(적용범위) 제2조제2호라 제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 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

선장, 접안시설
<u>여객선과 도</u>
<u>선</u>
바. (현행과 같음)
4
가
「해운법」, 「유선 및 도
<u>선 사업법」</u>
<u>대중교통시설</u>
나. (현행과 같음)
5. ~ 7. (현행과 같음)
4조의2(적용범위) <u>제2조제2호라</u>
목 및 마목

법을 적용한다. 제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 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 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다)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해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다.

②・③ (생 략)

•
에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
①
<u>수상대중교통</u>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
부장관
②・③ (현행과 같음)